

청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당당하게



농림축산식품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」 고시 개정 알림

「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」 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-45호)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동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-행정규칙 검색, 우리부 홈페이지-국민소통-법령정보-훈령·예규·고시에서 검색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 전문 1부. 끝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

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,소속기관(농을),산하기관(농병),중앙행정기관(19부),중앙행정기관(19청),중앙행정기관(4처),중앙행정기관(7위원회),17개 시도,(사)한국사슴협회장,(사)한국오리협회,(사)한국육계협회,대한양계협회,(사)대한한돈협회,(사)전국한우협회,(사)축산기업중앙회,(사)친환경축산협회,(사)한국낙농육우협회,한국종축개량협회,(사)한국토종닭협회,(사)한국흑염소협회

주무관 박정서 사무관 김동우 구제역방역과장 김정주 전결 2023. 7. 11.

협조자

시행 구제역방역과-4557 (2023. 7. 11.) 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/ http://www.mafra.go.kr

전화번호 044-201-2544 팩스번호 044-868-0469 / tankjs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